택시미터기(사용 및 수리) 검정 안내

※ 정기검사, 연장검사 시 미터검정 불합격 판정 후 당일 재 검정 불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아 래 -

❒ 사용검정

▸ 검정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실시

▸ 위 반 시 : 과태료 30 ~ 50만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등록증확인) 만료일 전·후 31일이 내 검정 받아야 함.

※ 검정기간 경과 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2~30만원)됨.

❒ 수리검정

▸ 검정일시 : 사용검정 불합격 시 즉시

▸ 위 반 시 : 과태료 100만원

※ 거래처인 수리검정 업체(미터기집)가 휴업인 경우 타 수리검정 업체(미터기집)에서검정을 받아야 함.

※ 불합격하여 택시미터를 교체할 경우 새 미터기로 당일 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과태료의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노.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법 제84조 제3항 제17호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00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30
나)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